

#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00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5월 2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출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, 일부 조항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약칭 부분을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법령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2조제2항)
-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제출을 서면으로 하고, 그 밖의 일부 오류 사항 등 자구를 수정함(안 제7조제7항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
○ 기타사항 : 「수정안조문대비표」 참조.

#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안 제2조제2항 중 “제41조” 를 “제43조” 로 한다.

안 제7조제7항 중 “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거부 시에는 관련기관 총괄부서가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” 를 “영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” 로 한다.

## 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감사와 조사를 행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</p> <p>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	<p>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 제43조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</p> <p>①~⑥ (생략)</p> <p>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</p>	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</p> <p>①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거부 시에는 <u>관련기관 총괄부서가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</p> <p>①~⑥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<u>영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41조”를 “제43조”로 한다.

제7조제7항 중 “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”를 “영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감사와 조사를 행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감사·조사의 범위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제43조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</p> <p>①~⑥ (생략)</p> <p>⑦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<u>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0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감사·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)</p> <p>①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영 제40조를 따라야 하며, <u>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</u></p>